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01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정춘생 · 황운하 · 이해민
윤종오 · 박은정 · 김준형
김선민 · 백선희 · 한창민
서왕진 · 신장식 · 모경중
김동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의 예방·대비·대응 및 피해 복구 주무기관을 산림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에게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관서에 소방 지원 활동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불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중복되고 그로 인해 산불 진화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의 예방 및 복구 주무기관은 산림청으로 하고,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산림청장”을 “소방청장 또는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산림청”을 “소방청, 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을 “소방청, 산림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산림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산림청장 및 해당·인접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림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소방청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산림청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산림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

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을 “소방청장,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u>산림청장</u>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 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이하 이 조에서 “산불경 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1조(산불 신고) 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 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u>산림청</u>,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u>산림청</u> 또는 산림재난방지 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그 밖에 산불 신고에 필요 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u>소방청장 또는 산림청장</u>---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산불 신고) ① ----- ----- ----- -----<u>소방청, 산림청</u>----- ----- ----- -----. ② <u>소방청, 산림청</u>-----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대통령령</u>-----.

로 정한다.

제32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①

산림청장은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이하 이 조에서 “산불진화자원”이라 한다)의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림 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발령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산불진화자원의 동원 기준, 발령 사항의 대 국민 알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

제32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①

소방청장-----

-----산림청장 및 해당·인접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소방청장-----

② -----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

지기관의 장-----

③ -----

대통령령-----

제33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시 · 도지
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로 확
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
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그 산
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할 수 있
다.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 운영 등) ① 제34조에
따라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
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
지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
하고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
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림재난 방지기관의 장인 경
우를 말한다)은 산불 발생 · 진
화 ·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

④ -----

-----소방청장-----
-----.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 운영 등) ① -----

-----소방청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

-----소방청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장-----.

④ (현행과 같음)

⑤ -----

-----대통령령-----
-.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① 소방청장, 산림청장-----

-----.

1. ~ 5. (현행과 같음)

② -----
-----대통령령-----

-----.

③ (현행과 같음)